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신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1527
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1월 16일

발의자 : 이신혜, 조규영, 김진철, 김동승, 이윤희, 오경환, 장인홍, 김문수, 유용, 김제리, 김기대, 김동울, 문종철, 김영한, 강성언, 유동균, 김구현, 장홍순, 김생환, 박기열, 김동욱, 이승로, 박진형, 김창수, 신원철, 김종욱, 김경자(양천)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. 이에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예를 들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‘정장대여, 프로필사진촬영, 헤어스타일링’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, 이 같은 사업들은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에 해당됨.
- 그러나 ‘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’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.
- 이에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4. 직무상의 행위
- 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
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되, 이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제 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
2.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(사진촬영, 헤어스타일링 등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 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</u></p> <p><u>2.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(사진촬영, 헤어스타일링 등)</u>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제2항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청년 구직비용

나. 전제

- 사업대상 인원은 면접정장대여, 헤어스타일링, 메이크업, 사진촬영 등 서울시 유사사업 대상으로 함
- 비용은 2017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방법

- 서울특별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의 예산(안) 자료를 기초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총 비용(합계) = 83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17)	2차년도 (2018)	3차년도 (2019)	4차년도 (2020)	5차년도 (2021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청년구직비용 (제11조)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830,000
	소계(b)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830,000
□ 총 비용(b-a)	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830,0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담당관
정책조사팀장
분석관

예산정책담당관
남승우
여차민
이정수

☎02-3705-1280, e-mail(intezer@seoul.go.kr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청년 구직비용

2. 비용의 추계

가. 총비용 ≙ 830,000천원

- 총비용 = 청년 구직비용

나. 청년 구직비 ≙ 830,000천원

- 청년 구직비 = $\sum_{i=1}^5 (\text{연간비용})_i$

i = 비용추계 연차(2017년~2021년)

- 연간비용 ≙ 166,000천원

- 청년구직 비용 ≙ 166,000천원

· 청년구직비용 : 면접정장대여 + 헤어스타일링 + 메이크업 + 사진촬영
= 100,000 + 30,000 + 16,000 + 20,000

- 면접정장대여 : 100,000천원

· 25천원(1회) × 4,000명

- 헤어스타일링 : 30,000천원

· 남성 5천원 × 2,000명 = 10,000천원

· 여성 10천원 × 2,000명 = 20,000천원

- 메이크업 : 16,000천원

· 남성 5천원 × 2,000명 = 10,000천원

· 여성 30천원 × 2,000명 = 6,000천원

- 사진촬영 : 20,000천원

· 5천원 × 4,000명 = 2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7)	2차년도 (2018)	3차년도 (2019)	4차년도 (2020)	5차년도 (2021)	합 계
면접정장대여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헤어스타일링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
메이크업	16,000	16,000	16,000	16,000	16,000	80,000
사진촬영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합 계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166,000	830,000

주 : 1. 물가상승률 미반영

2.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유사사업 예산 적용하여 추계